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자료우선활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을 증원하고, 통계빅데이터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증원하며,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보안 담당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통계국 1개 과(소득통계개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관리국 1개 과(지역통계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
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
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00.00. 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전략성과팀을 성과관
리 업무의 안정화·내재화에 따라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7명(9급 7명)
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2022년 12월 22일로 2년 연장하
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능정보화팀을 총액인건비로 신설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과(지역통계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전략성과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점검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조의4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제1조의4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6. 북한통계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 중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통계조정과·통계심사과**”를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경제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6.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사회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6.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제2항 중 “통계서비스기획과”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기획과”로,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지능정보화팀”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3.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
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제8호 중 “북한통계, 국제통계”를 “국제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⑪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3. 청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대상 조직)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총계 “663”을 “66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59”를 “663”으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4”를 “195”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57”을 “160”으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670”을 “67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66”을 “670”으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4”를 “195”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2”를 “175”로 한다.

별표 4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49”를 각각 “5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48”을 “5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

되는 지능정보화팀은 2023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전략성과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u> ----- ----- ----- <u>기술서기관</u> ----- ----- -----.
③ <u>기획재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관</u> 을 보좌한다.	③ <u>기획재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관</u> 을 보좌한다.
1. <u>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u>	1. <u>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u>
2. <u>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u>	2. <u>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u>
3. <u>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u>	3. <u>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u>
4. <u>삭제 <2017. 12. 26.></u>	4. <u>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u>
5. <u>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u>	5. <u>정기·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u>
6. <u>정기·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u>	6. <u>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u>
7. <u>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u>	7. <u>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작성	8.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점검	1.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삭제 <2017. 12. 26.>		2.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 12. 26.>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삭제 <2017. 12. 26.>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평가	
11. 삭제 <2017. 12. 26.>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5.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3.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통계정책국) ① (생략)	제2조(통계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14.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점검	④ ----- ----- --.	②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통계조정과·통계심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통계정책과·통계기준과·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 -----.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3. 책임운영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⑤ 통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⑤ ----- ----- --.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2. 통계작성의 승인	2.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 북한통계에 관한 사항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3. 경제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1. ~ 5. (생략)	<삭제>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	
<신설>			
⑥ 삭제			
⑦ 전략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u>황 파악 및 평가</u>	4.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
5. 통계작성기관과의 <u>협력 및 지원</u>	한 기술지도
	5.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u>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u>
	6. 경제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u>협력 및 지원</u>
	7.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u>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u>
	8.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
	<u>의 평가에 관한 사항</u>
	9.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
	<u>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10. 경제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
	<u>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u>
⑥ 통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
<u>분장한다.</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u>운</u>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
<u>영계획 수립 및 시행</u>	<u>항</u>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u>평</u>	2.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
<u>가에 관한 사항</u>	<u>정 및 지도</u>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u>개</u>	3. 사회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u>선에 관한 사항</u>	4.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
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u>자</u>	한 기술지도
<u>문에 관한 사항</u>	5.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u>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u>
	6. 사회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u>협력 및 지원</u>
	7.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u>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u>
	8.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
	<u>의 평가에 관한 사항</u>
	9.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
	<u>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10. 사회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
	<u>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데	② -----
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	<u>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u>
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u>기획과</u>-----
<u>마이크로데이터과를</u> 두되, 각	<u>지능정보화팀을</u> -----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
<u>기술서기관으로</u> 보한다.	<u>기술서기관으로</u> 보하고, 팀장은
③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u>
<u>사항을 분장한다.</u>	<u>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u>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	<u>관</u>-----.
③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③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u>사항을 분장한다.</u>	<u>사항을 분장한다.</u>
1. 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	1. 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

<u>행</u> 2.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3.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 · 관리 4. 청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7.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8. 삭제 <2017. 2. 28.> 9.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12.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 ⑥ (생략) ⑦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3. 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 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⑧ -----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북한통계, 국제통계 및 기획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신설> ⑧·⑨ (생략) ⑩ (생략)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국제통계 ----- <삭제> 10.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⑦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 · 관리 3. 청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	--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①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8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략성과팀은 <u>2020년 12월 22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8.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기획재정부령 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u>2020년 2월 24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은 <u>2020년 12월 22일까지</u> 존속한다.	----- ----- ----- --- <u>2022년 12월 22일</u>----- -----.
--	---

신·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63</u>	<u>667</u>	+4
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659</u>	<u>663</u>	+4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194</u>	<u>195</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157</u>	<u>160</u>	+3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70</u>	<u>674</u>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666</u>	<u>670</u>	+4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194</u>	<u>195</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172</u>	<u>175</u>	+3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9</u>	<u>52</u>	+3
일반직 계	<u>49</u>	<u>52</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8</u>	<u>51</u>	+3

(별지)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조사관리국 지역통계총괄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2) 경제통계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3)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3명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